서울시 정책

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사업개요

정책 유형	복지.문화
정책 소개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청년할인 대상(만 19~39세)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의 할인 제공
지원 내용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3항ㅇ 추진 경과- 기후동행카드 기자설명회: '23.9.11-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 '24.1.27-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적용: '24.2.26- 본사업 개시(청년할인 적용 및 사후환급 추진): '24.7.1 사업 기간: '24.7.1. 이후~ 계속 사업 대상: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 '24년 기준 '85.1.1부터 '05.12.31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 대상- 단, 티머니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본인 연령 인증 필수 사업 내용- 청년할인 연령 대상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7천원 할인 혜택 '25년 사업비: 10,500 백만원 (지방비 100%)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만 39세
학력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사업개요

정책 유형	복지.문화
정책 소개	o 청년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발굴과 맞춤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 향상지원 및 사회진입 촉진
지원 내용	○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 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경과)- 2019년: 고립청년 밀착지원 사업(시범사업) 추진- 2020년~: 서울시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 지원사업- 2021년: 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2년: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실시- 2023년: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 계획 수립- 2024년: 고립·은둔청년 전담기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 개관○ (사업 기간) '20년~○ (사업 대상) 서울시 거주 19~39세 고립·은둔 청년- (연령 기준) 19~39

	세- (소득 기준) 없음○ (사업 내용) 고립·은둔청년과 가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맞춤지원- (원스톱 지원) 발굴→진단→지원→사회진입→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 ·관리- (주변인 지원) 부모 등 주변인 대상 실전형 교육,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생태계 조성) 민·관 다양한 자원 발굴, 연계로 자기주도 회복 지원○ (사업비) 4,329백만원 (지방비 4,329백만원)
사업운영기간	
지원규모	0

신청자격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사업개요

정책 유형	복지.문화
정책 소개	o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지원 내용	○ (사업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의2(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추진 경과)- 2019. 4.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실시- 2021. 7. 지원대상, 지원기간 확대('17.5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3년 → 18.8월 이후 자립준비청년, 5년)*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21.7.13)- 2022. 8. 자립수당월 30만원 → 월 35만원 증액- 2023. 1. 자립수당월 35만원 → 월 40만원 증액- 2024. 1. 자립수당월 40만원 → 월 50만원 증액○ (사업 기간) '19년~○ (사업 대상)- (연령 기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된 자- (기타조건)·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사업 내용)-방문·우편·온라인 신청 시, 자치구에서 지급결정하여 매월 50만원 지급(최대 60개월)○ (사업비) 8,464백만원(국비 4,232백만원, 지방비 4,232백만원)
사업운영기간	
지원규모	0

신청자격

연령	만 15세 ~ 만 23세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정책 유형	복지.문화	주관 기관	돌봄고독정책관
정책 소개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자립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 의욕 고취		
지원 내용	□ 본인저축액:월 15만원□ 매칭지원 액: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 립□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 개월(3년)중 선택□ 적립금 총액○ [15만원·2년]총 720만원○ [15만원·3 년]총 1,080만원□ 저축방법:매월 자동이체		
사업운영기간		사업신청기간	20250609 ~ 20250620
지원규모	10000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 만 34세
학력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추가단서 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5. 6. 9.(월) ~ 6. 20.(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 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PC만 신 청 가능)	
심사 및 발표		
제출서류		
신청 사이트	https://account.welfare.seoul.kr	

기타

기타사항	○ (사업 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5조 및 시행규칙 제2·3조-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소득 근로청년 자립지원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56호, '15.6.6)○ (추진 경과)-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출시('15년 1,000명)-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확대('18년 2,000명, '19~'20년 각 3,000

	명, '21~'22 7,000명, '23~'24 10,000명) 이 (사업 기간)- '25. 1월 ~ '25. 12월이 (사업비) 46,307백만원 (시비 45,307, 민간재원 1,000)
운영기관	
참고 사이트 I	https://youth.seoul.go.kr/content.do?key=2310100069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사업개요

정책 유형	복지.문화	주관 기관	청년사업담당관
정책 소개	o 학자금 대출 및 신용대출 등의 채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신용회복과 금융 생활 지원		
지원 내용	이 사업 근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이추진 경과① 긴급생활안정자금- 서울시-신용회복위원회-우리은행 협약 체결(2021년)- 서울시-신용회복위원회-신한은행 협약체결(2024년)②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서울시-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 체결(2017년)이 사업 기간: '12. 4. ~ (계속)이 사업 대상: 서울거주 19~39세 신용유의자 또는 채무성실 상환자이 사업 내용-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을 위한 차입금 이자 지원-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신용유의자 분할상환 약정시 초입금 지원이 사업비: 530백만원 (지방비 100%)		
사업운영기간		사업신청기간	20250201 ~ 20251031
지원규모	0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만 39세
학력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추가단서 사항	

|--|

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 급 지원)

사업개요

정책 유형	복지.문화	주관 기관	복지기획관
정책 소개	일하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 (사업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 지원)○ (추진 경과)- 2018년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2020년 청년대일저축계좌 도입-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편(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기간)- 2025년 1월 ~ 12월 시행○ (사업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사업내용)- 차상위 이하(수급자 포함) ▶ 본인저축액:월 10만원이상 자율저축 (10만원 ~ 50만원까지) ▶ 정부지원액:30만원 (3년 평균 적립액:1,440만원+이자)- 차상위 초과 ▶ 본인저축액:월 10만원이상 자율저축 (10만원이상 자율저축 (10만원이상 자율저축 (10만원이상 자율저축 (10만원이상 자율저축 (10만원이상 자율자축 (10만원이상 지원액:720만원+이자)○ (사업비)88,221백만원(국비 60,151,지방비28,070) ※ 매칭비율 60:28:12- 청년내일저축계좌 81,286백만원 (국비55,422 지방비 25,864)		
사업운영기간		사업신청기간	20250401 ~ 20250430
지원규모	0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학력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추가단서 사항	
참여제한 대상	

서울시 청년수당

복지.문화	주관 기관	서울시청 미래청 년기획관
정책 소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 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	
지원 내용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시해외생성형프로그램)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5.12.31.까지 보관 바람*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유의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사용 금지-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증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 축적 용도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ex: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등)	
사업운영기간	2025.06.~2025.12.	사업신청기간
지원규모	20,000명 내외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4세* 의무복무 제대군인 대상 지원기간 최대 3년 연장 (복무기간별 연장기간 상이, 공고문 참조)
학력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최종학력 졸업
취업상태	미취업자,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추가단서 사항	취업여부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사업참여 제외대상 : 공고문의 붙임 참고
참여제한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재학생 및 휴학생*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5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 지원제도」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2017년~2025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25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신청방법

신청절차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1566-3344△서울 시 다산콜센터(1120)△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카카오톡 상 담하기 (온라인 실시간 상담 이용하기 11 https://url.kr/r8bcva)	
심사 및 발표	선정 및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 : 2025. 7. 7.(화) 18:00 (예정)*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필수 이행사항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7. 29.(화) (예정)* 매월 29일 지급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제출서류	□ 제출서류 (3종)*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1)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필수제출)(2) (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계약서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무(3) (만 35세~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불가)* 만 35~37세임에도 해당 서류 미제출한 자는 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미선정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사이트	https://youth.seoul.go.kr/youthPnsn/step1.do?key=2308160001
기타	
기타사항	신청 시 기입 정보-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물하에 대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확히 기재 필요- <u>참고 사이트 I>공고문, 공지사항 필독</u>
운영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 사이트 I	https://youth.seoul.go.kr/youthConts.do? key=2310100061≻_pbancSeCd=012≻_bbsStngSn=2212200001≻_bbsCtgrySn=2310200011≻_qnaCtgryCd=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정책 유형	복지.문화	주관 기관	서울시청 안심돌봄복 지과
정책 소개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 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 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 함		
지원 내용	〇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 15만원- 매칭지원액: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중 선택-적립금 총액:[15만원·2년]총 720만원,[15만원·3년]총 1,080만원-저축방법:매월 자동이체-매칭금액 지원기관:서울시,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사업운영기간	2024. 5.~2024.12	사업신청기간	2024-06-10~2024- 06-212024. 6. 10. (월) ~ 2024. 6. 21. (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지원규모	10,000명	관련 사이트	

신청자격

연령	만 18세 ~ 34세
학력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추가단서 사항	□ 신청자 확인사항○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신청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후 재전입, 소득·재산 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참여제한 대상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 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불가능한 자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 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前 신청한 경우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방법

신청절차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account.welfare.seoul.kr)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동주민센터 확인: www.juso.go.kr) (접수마감일까지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심사 및 발표	□ 선발방법○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차 심사 : 선정심사 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⑨ 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최종대상자발표 : 2024. 10. 15.(화)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2024. 10. 15.(화) ~ 10. 25.(금) 순차적으로 안내*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선발자 발표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제출서류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필수서류]① 가입신청서② 개인정보제 공동의서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⑤ 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반드시 공고문의 제출서류 확인
신청 사이트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기타

기타사항	□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운영기관	서울시복지재단
참고 사이트 I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youthBank.lp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

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사업개요

정책 유형	복지.문화
정책 소개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청년할인 대상(만 19~39세)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의 할인 제공
지원 내용	사업 근거-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3항ㅇ 추진 경과- 기후동행카드 기자설명회: '23.9.11-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 '24.1.27- 기후동행 카드 청년할인 혜택 적용: '24.2.26- 본사업 개시(청년할인 적용 및 사후환급 추진): '24.7.1 사업 기간: '24.7.1. 이후~ 계속 사업 대상: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 '24년 기준 '85.1.1부터 '05.12.31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 대상- 단, 티머니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본인 연령 인증 필수 사업 내용- 청년할인 연령 대상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7천원 할인 혜택 '25년 사업비: 10,500 백만원 (지방비 100%)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만 39세
학력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1

25. 7. 1. 오후 4:11 고용정책

고용정책 소개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청년내일채움 공제

가이드 전체 출력 미리보기

목차

개요

지원내용

<u>지원절차</u>

<u>주의사항</u>

<u>신청과 이의신청</u>

<u>관련제도 소개</u>

<u>자주묻는질문</u>

개요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하는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23년 기준)

※ '24년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됩니다. 기존에 청약을 신청하신 분들만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제로 돌아가기

다음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을 적립합니다. 청년은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형성이 가능하고 만기공제금 1,200만원(이자 별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공제 만기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연계가입 할 수 있습니다.

주제로 돌아가기

이전

다음

지원절차

* 공제부금 적립(청년·기업·정부) → 만기

유사제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 자리 청년취업지원금) 25. 7. 1. 오후 4:11 고용정책

1) 공제부금 납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약이 승낙된 기업과 청년은 공제부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납입기간은 청약승낙일로부터 2년(24개월)까지 입니다.
- ('23년 기준) 납입금액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씩, 이후 4개월간은 월 20만원씩 납부합니다.(2년간 총 400만원 납입)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청년이 희망하는 날짜에 납입할 수 있으며,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합니다.

2) 정부지원금 신청

기업은 청약승낙일 이후 1개월 임금분에 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청년내일채 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 이체내역 등), 청년 확인서 와 기업 확인서를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에 임금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은 청약승낙일 이후 주기적(6, 12, 18, 24개월 임금지급 후)으로 '청년공제 운영상황 점검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2년 이전 가입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및 아래 서류를 관할 운영기관에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제출합니다.(운영기관으로 지원금 신청서 등 제출)

- *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기업명의 통장사본 등(취업지원금과 함께 신청시 중복 제출 불필요)
- 3) 공제 가입 후 퇴사 등 변동시

(중도해지) 공제 가입 후 청년의 퇴사, 근로조건 및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사유는 기업사유와 청년사유, 기타 사유로 구분되며,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청년, 기업)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누리집(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를 신청해야합니다.

- * (기업사유)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권고사직,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기업부담금 미납 및 지원금 신청서 미제출 등
- * (청년사유) 이직, 창업, 학업, 자기부담금 미납 및 사업자등록 등
- * (기타 사유)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경우
- * (납입중지) 공제 가입 후 재직 중 육아휴직, 병역의무 이행, 질병 등으로 청년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납입중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공제 청약누리집(sbcpla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공제금 만기 지급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청년은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sbcplan.or.kr)에서 해당 기간의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공제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자기부담금 400만원 + 기업부담금 400만원 + 정부지원금 400만원 = 총 1,20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5. 7. 1. 오후 4:11 고용정책

주제로 돌아가기 이전 다음

주의사항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기업)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징수금액이 발생할 수있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주제로 돌아가기 이전 다음

신청과 이의신청

 $^{\prime}$ 23년 가입자부터는 지역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2년 이전 공제가입 청년은 가입 당시의 운영기관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주제로 돌아가기 이전 다음

관련제도 소개

- <u>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u>
- <u>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u>
- <u>내일채움공제</u>
- <u>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u>
- <u>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u>

주제로 돌아가기

이전

다음

자주묻는질문

■ 운영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운영기관은 '22년 이전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동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23년부터는 지방관서 고용센터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2년 이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및 기업은 지원금 신청 및 확인, 공제부금 적립현황, 기타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가입시 담당하였던 운영기관(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으로 문의하시면됩니다.

<운영기관의 역할>

25.7.1.오후 4:11 고용정책

- ㅇ 청년공제 시행지침 등 중요사항 안내
- ㅇ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공제 사업 실시지도 및 관리
- ㅇ 공제금 적립을 위한 지원금 적기신청 안내 및 요건 확인 등 신청 지원
- ㅇ 청년과 실시기업의 공제부금 적립현황 관리
- ㅇ 청년공제 참여,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근속유지 관리, 부정수급 및 청년에 대한 부당대우 모니터링 등
- ㅇ 기타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u>청약 홈페이지(www.sbcplan.</u> or.kr)에서 지급신청하면 됩니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이후, 중진공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 만기금은 공제가입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즉, 청년의 자기부담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과 기업은 매월 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고, 미납부 금액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또한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22년 이전 가입자는 해당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청년이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 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됨

■ 기업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 규모는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수 산정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

■ 공제부금 적립 구조는?

'23년부터 청년, 기업, 정부의 공제부금 적립금액은 각 400만원으로 동일하며, 기업부담 적립금은 정부 지원없이 100% 기업 부담입니다.

청년과 기업은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 납입시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청년이 지정한 납입일

정부는 2년간 총 400만원을 총 5회차(1,6,12,18,24개월)에 걸쳐 적립

25.7.1.오후 4:11 고용정책

■ 구인광고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높게 제시하는 경우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고방법은?

기업에서 구인광고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실제 임금보다 높게 제시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인 기업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제 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게시 가능합니다.

거짓 구인광고 발견 시 기업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고용관리과(고용관리과가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급여 삭감, 급여 반납, 적정 범위를 넘는 업무지시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대처 및 신고 방법은?

기업에서 청년에 대한 임금을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계약과 다르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반납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 며, 집단 따돌림, 폭언, 적정 범위를 넘는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근무환경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행위는 「근 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청년공제 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감독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퇴사, 휴직, 질병, 근로조건 변동 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여자격 신청 및 선발을 담당했던 관할 고용센터('22년 이전 참여자는 담당 운영기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로 문의하시면 중도해지, 납입중지 등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주제로 돌아가기

이전

최종수정일 2024-01-04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기구
 -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지원금액 : 월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1회

-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 신청접수 및 선정

ㅇ 접수기간 :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마감)

ㅇ 선정인원 : 25,0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ㅇ 지급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 지급일정 : 첫 지급분(7월, 8월분) 8월 26일 지급 이후, 11월(9월, 10월분), '25년 1월(11월, 12월분), '25년 3월(1월, 2월분), '25년 5월(3월, 4월분), '25년 7월(5월, 6월분)지급예정 (※ 지급일정 변동 가능)

※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 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4. 2월 ~ 2025. 2월(약 1년간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www.bokjiro.go.kr (문의 : 1600-0777)

※ 정부(국토부)·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신청 가능(수혜 중인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2. 신청 자격요건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ㅇ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 부모, 형제, 친구 등 <u>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u>
- o (연령) 만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

이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3.12.기준)은 5.5% 적용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3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3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예시2) 보증금 4천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98만원으로 신청 불가

- ⇒ 보증금 월세 환산액 18만원(4천만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원
- ※ 천원 단위는 절사함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9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4천5백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ㅇ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u>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u> 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단위 : 원)

 기준	건강보험료		(단위 : 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중위소득	당위소득 무파 가구원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지구원수 원소득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2,675,000 95,183 24,266 2인 4,420,000 157,035 109,680 3인 5,658,000 202,377 152,948 4인 6,876,000 247,170 205,217 5인 8,035,000 289,638 254,448 6인 9,143,000 324,452 291,356 7인 10,218,000 377,299 351,294 8인 11,294,000 422,318 400,222 9인 12,370,000 453,848 433,430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1인 3,343,000 119,657 61,984 2인 5,524,000 196,672 146,739 3인 7,072,000 251,147 210,599 4인 8,595,000 304,986 271,091 5인 10,044,000 360,818 332,772	24,266 95,712				
120% 이하 10의 11,294,000 157,035 109,680 109,680 120% 이하 6인 11,294,000 247,170 205,217 120% 10,218,000 377,299 351,294 8인 11,294,000 422,318 400,222 9인 12,370,000 453,848 433,430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120%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이하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월소독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675,000 95,183 24,266 95 4,420,000 157,035 109,680 15 5,658,000 202,377 152,948 20 6,876,000 247,170 205,217 25 8,035,000 324,452 291,356 33 10,218,000 377,299 351,294 39 11,294,000 422,318 400,222 45 12,370,000 453,848 433,430 49 13,446,000 498,289 478,514 54 3,343,000 119,657 61,984 12 5,524,000 196,672 146,739 19 7,072,000 251,147 210,599 25 8,595,000 304,986 271,091 31 10,044,000 360,818 332,772 37 11,428,000 422,318 400,222 45 12,773,000 453,848 433,430 49 12,773,000 453,848 433,430 49 12,773,000 453,848 433,430 49 14,118,000 543,979 524,772 58 15,463,000 589,232 567,285 65	199,492				
120% 이름 109,680 157,035 109,680 3인 5,658,000 202,377 152,948 4인 6,876,000 247,170 205,217 5인 8,035,000 324,452 291,356 7인 10,218,000 377,299 351,294 8인 11,294,000 422,318 400,222 9인 12,370,000 453,848 433,430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1인 3,343,000 119,657 61,984 2인 5,524,000 196,672 146,739 3인 7,072,000 251,147 210,599 4인 8,595,000 304,986 271,091 5인 10,044,000 360,818 332,772 6인 12,773,000 453,848 433,430 8인 14,118,000 543,979 524,77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150%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이하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출처 : 보건복지부(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http://www.nhis.or.kr) 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문의☎1577-1000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클릭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ㅇ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ㅇ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ㅇ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 ㅇ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ㅇ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ㅇ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ㅇ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ㅇ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o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신고필증이 아님)
 -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① 입실확인서
 -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자료실)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 o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ㅇ 선정인원 : 25,000명

o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 구가별 선정기준 〉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4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 경우에도 임차보중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2,500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 차임(월세)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합산

5. 심사결과 발표

ㅇ 일시 : 2024년 6월 예정

ㅇ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6. 이의신청

ㅇ 대상자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 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알림)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7. 최종 선정결과 발표

ㅇ 일시 : 2024년 7월 초 예정

ㅇ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o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입금 전용계좌(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 추후 안내)

8. 선정자 의무사항

- ㅇ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서울시외 타 지역 전출 후 서울시 재전입 포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 ㅇ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 ※ 중지·변경 신청 미등록 시 중지·변경 사유 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

9. 기타 유의사항

-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ㅇ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됩니다.
- ㅇ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화 문의 폭주로 인한 상담 지연 및 장애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사업 공고일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2부제(생년월일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는 짝수일) 문의를 가급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지원센터에서는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콜센터(☎1833-2030) 등을 통하여 상담 시행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정확한 정보(자료) 없이 신청자 의사를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하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전화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문의 창구 운영 :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 1:1문의 이용 바랍니다.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 주거포털 공지사항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바랍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절차 〉

신청·접수 (4월)		자격심사 (4월~6월)	심사결과 통보 (6월)		최종선정자 발 표 (7월)	지원금 지급 (8월말)
서울주거포털 '청년 월세 지원'	\Rightarrow	서류심사 (재산조회 등), 중복지원 여부	심사통과자 통보 / 이의 신청 접수	\Rightarrow	최종 심사통과자 전산 추첨	선정자 계좌 개설에 따른 지급 (미개설 시 지급 불가)